전부개정 2010년 3월 2일 규칙 제665호 일부개정 2023년 6월 1일 규칙 제936호 일부개정 2025년 2월 28일 규칙 제975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(이하 "조례"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사용개시등의 신고)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.
  - 1.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
  - 2.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
  - 3.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
  - 4. 하수도 사용 업종(적용구분)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
  - ②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,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과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.
  - ④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정하며,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. 〈개정 2023. 6. 1〉
- 제3조(일시 사용신고)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도서의 종류	명 시 할 사 항
○ 부근약도	○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
○ 배수계통도	○ 배수계통 주변상의 위치구조
○ 공사현장 도면	○ 평면도, 단면도
○ 오수배출량 계산서	○ 펌프의 명칭
	○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

- 제4조(점용허가 신청)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려는 자는 「오산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」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일반평면도(구적도, 안내도 포함)
  - 2. 설계서(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)
  - 3.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·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의 사본
- 제5조(점용허가의 준공검사) 조례 제7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 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6조(중수도 설치신고 및 확인)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중수도 설치를 완료한 자는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10일 이내에 시설을 확인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- 제7조(배수설비 설치신청) ① 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.
- 제8조(배수설비 준공검사)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신청을 하고자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검사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  - 1.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연막 또는 염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 연결 후 되메우기 하기 전에 배수설비 하려는 장소의 최종 맨홀에 독성이 없는 연막 또는염료를 투입하고 제일 가까운 시 관거 맨홀을 열고 적절히 연결 되었는지 여부를확인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.

- 2.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CCTV를 이용하여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시 관거 맨홀 로부터 배수설비 접속부분까지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9조(공사의 연장사유) 배수설비설치공사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시 장에게 공사연기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토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- 1. 태풍·홍수 그 밖의 악천후, 지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
  - 2. 암반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기간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
  - 3.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
  - 4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10조(상수도 급수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)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은 「오산시수도급수조례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- 2.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(1월간 사용량 = 시간당 출수량 × 1월간 양수시간)한다.
  - 3.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 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(1월간 사용량 = 전력 Kw 출수량 × 1월간 전력 사용량) 한다.
  -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.
  - 1.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(1월간 사용량 =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× 1월간 급수시간)한다.
  - 2.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, 우물,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 량 기준표, 사용인구, 양수설비,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.
  - 3.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산정기준으로 한다. 다만, 16.50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, 양어장 등은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

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미만은 버린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수조, 휴대용 양수기 순간우량계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, 순간우량계 등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규정별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.
-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4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.
- 제11조(사용료의 조정) ① 지하수,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. 다만, 상수도(사설상수도,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)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.
  - ②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,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여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.
  - ③ 조례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료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의하여 조정한다.
  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  - 1. 배수중지 처분된 자
  - 2.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
  - 3. 「오산시수도급수조례」제26조 및 제43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자
- 제12조(계측기의 검정시험)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 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 는 다음달 분 사용량에서 결산하거나 반환 또는 추가징수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.
  -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「오산시수도급수조례」의 규정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.

- 제13조(사용료 고지등)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고지용지는 오산시상수도납부고지서 서식에 따른다.
  -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하수도 사용료 그 밖에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.
- 제14조(대행업자의 청소결과 보고)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.
  - ② 대행업자가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정화조 등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5조(비정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) 오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용량의 10할 이내로 배출하는 경우 내부청소를 유예할 수 있다.
- 제16조(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등) ① 환경사업소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월단위로 부과·징수 할 수 있으며「지방세법」과「오산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」을 준용한다.
  - ② 환경사업소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분뇨등의 반입 확인대장을 작성하고 대행업체 별 반입실적을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7조(대행업자의 교부금 신청) 분뇨수집·운반 대행업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8조(과태료 감경) 과태료 의견 제출은 별지 제17서식에 따라 신청하고,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15일 이내 자진납부하려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8조에 근거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다.
- 제19조(과태료 처분통지) ① 시장은 과태료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서식의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낸 후 별지 제19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지로용지를 발부하여야 한다.
  -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.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

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.

- 제20조(이의제기) ① 위법 또는 부당하게 부과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 22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시장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.
- 제21조(사용료등 감면 등) ① 조례 제2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〈개정 2023. 6. 1〉
  - 1. 천재지변 ·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전액감면
  - 2.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전액감면
  - 3. 불출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전액감면
  - 4. 제2조제4항의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있어 신고 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확인하여 차이 수량만큼 감면
  - 5. 하수도 사용료를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퍼센트를 감면하고(최대 건당 5천원 한도내에서 감면) 체납료에 대해서는 감면에서 제외한다.
  -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3. 6. 1〉
  - ③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사용료 등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. 〈개정 2023. 6. 1〉
  - ④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관련 공 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감면조치를 해제한다.
  - ⑤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수도요금의 할인 및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신청한 것으로 본다. 〈신설 2023. 6. 1〉
- 제22조(가산금과 납입독촉)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의 독촉과 같이한다.
- 제23조(자료제출명령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및 점용자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  - 1. 조례 제4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
  - 2. 조례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
  - 3. 조례 제20조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
- 제24조(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)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의 착오납입, 이중납입,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,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3. 6. 1〉
  -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, 이유, 지급절차, 지급장소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3. 6. 1〉
  -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급는 해당년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. 다만,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중에서 환급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3. 6. 1〉
  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 야 한다. 〈개정 2023. 6. 1〉
  - ⑤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 환급이자 및 기산일에 대해서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62조에 따른 이자를 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〈신설 2023. 6. 1〉

[제목개정 2023, 6, 1]

- 제25조(이의신청)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시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 6. 1]

- 제26조(위탁징수) ① 하수도의 사용료, 점용료, 기타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.
 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모든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의한다.

[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3. 6. 1]

- **제27조(원인자부담금)**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세 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.
  -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·시설물·건축물 등을 인가·허가·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, 준공검사필증(사용 승인)을 교부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  - ③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사전협의하여 조정한다.
  - 1. 착공 전: 100분의 80
  - 2. 준공 신청 시: 100분의 20

[본조신설 2025, 2, 28]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오산시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」은 이를 폐지한다.

**부칙**〈2023. 6. 1 규칙 제936호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규칙의 개정규정은 이 개정규칙 시행 해당월의 사용량 부과 분부터 적용한다.

**부칙** 〈2025. 2. 28 규칙 제975호〉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구경별 출수량 기준표(내경)

구	구 경 최대출수량 표준출수		표준출수량	시간당	출수량
mm	인 치 (inch)	의 대설 구성 (m³/분)	(m³/분)	최 대 (m³/분)	표 준 (m³/분)
20	3/4	0.03	0.025	1.8	1.5
25	1	0.06	0.05	3.6	3.0
32	1-1/4	0.10	0.08	6.0	4.8
38	1-1/2	0.15	0.13	9.0	7.8
50	2	0.26	0.20	15.6	12
65	2-1/2	0.45	0.3~0.4	27	18~24
75	3	0.62	0.5~0.53	37.2	30~31.8
100	4	1.20	0.85~1.1	72	51~66
125	5	1.90	1.4~1.7	114	84~102
150	6	2.70	2.1~2.6	162	126~156
175	7	3.80	3.3	228	198
200	8	5	4~4.3	300	240~258
250	10	8	6~7.5	480	360~450
300	12	12	9~11	720	540~660
350	14	16	14	960	840
400	16	21	17~20	1,260	1,020~1,200
450	18	27	25	1,620	1,500
500	20	33	30	1,980	1,800

# [별지 제1호서식]

	공공	공하수도시	<b>용</b> (개시·	중지·폐	ス]・	재사용	-) 신	고서	
사	관리번호			주민등	등록	F번호			
용	주 소						상	ই	
자	성 명			업태			전화	번호	
	사 용 수		지하수	하	하천수			<b></b> 타(	)
	사용년월일			Į.	1		QF.	]	일
	배 출 량	생활하수		m³/일		사업장	폐수		m³/일
	급수실태	사용인구		명		연 건	. 평		m²
신 고	상 수 도	수전번호				업종		월평균 사용량	m³/일
		자	동모타펌프	<u> </u>		•	フ		타
내	양수시설	모타규격		마력		설치대	개수		대
용		설치대수		대		구	경		mm
		관 구 경		mm		양수목	등력		m³/H
		양수능력		m³/H		기	타		
	기 타 참고사항								
	「오산시 하수	-도 사용 조	걸레 시행규	구칙」 제 <u>:</u>	2조	<u>:</u> 에 따	라 위외	나 같이 신	고합니다.
			Ļ	<u> </u>	]	일			
			신고인			(	인)		
Ç	일 산 시 장 =	귀하							
첨-	부서류 : 위치	도 1부.							

# [별지 제2호서식]

		지	하수등	의 사용	용량 신	!고서			(월)				
<b>,</b> 1	관리변	]호				주민등록번호							
사용	주	소							상	ই			
자	성	명				업태			전호	바번호			
			자동도	2터펌프			7]			-동펌프	-,	)	
야	모터구	구격				마력	설치	개소	수				
수 시	설치다	H수				대	구		경			m	/m
설	구	경			r	m/m	양 수	- 능	럭			m³	/hr
	양수능	등력			n	n³/hr	7]		타				
גו	<u>a</u>	도											
신 고	사용기	]간											
내 용	사 용	량	일간			m³	월간					r	n³
J	비	고											
	「오산/	시 하	수도 시	P용 조려	] 시행 <sup>-</sup>	규칙」	제2조에	따i	라 위	와 같ㅇ	] 신고	합니다.	
					1	년	월	일					
				수 (	<u> </u>			(	인)				
오	. 산 시	장	귀하										
				정 입증/		시기 ㅂ							

# [별지 제3호서식]

				사용량과	배출	량의 차(	이 신고	그서		
<b>2</b> ]	관리	미번호				주민등	록번호			
사 용 기	주 소							상 호		
자	성	명			업태			전화번호		
	제	품 명	단위	월간생산량		물함유량 (비율%		물사용량 (m³)	기타감수량 (m³)	
감										
수 량										
하 수	9	수총령	<b>∮</b> (m³)	감 수 량(m³	) 하수배출량(m³)			사	용 기 간	
수도사								20 ~ 20 ( 일간)		
용 량										
				용 조례 시행 고합니다.	규칙	」제2조이	] 따라	물 사용량고	<b>라</b> 하수배출량의	
					냗	월	일			
				신고인				(인)		
오 ^	산 ㅅ	] 장	귀하							
첨부	-서류	: 입	증서류							

# [별지 제4호서식]

			하수도사용	음 업종	(적용구분)	변경신고서				
.1	관리	번호			주민등록번.	ই				
사   용   자	주	소				상 호				
사용자 업종(적용구분)	성	명		업태		전화번호				
업	현	행								
공 ( 적	변	경								
용 구 브	변경	사유								
· 正 )	변경	일자								
	「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									
					_					
			신고	<u>1</u> 인		(인)				
오	산 시	장 =	귀하							
첨녀	부서류	: 업종	종(적용구분)변경	에 따른	입증서류					

### [별지 제5호서식]

			7-14-7-0111			
		공	공하수도 일시	사용 신고	.서 -	
신	주 소				상 호	
고 인	대표자성명		주민등록번호		전화번호	
	공 사 명					
	사용장소					
신	사용기간					
고 내	사용목적					
용	사용수	상수도수	-, 공업용수, 지형	누수, 하천수,	기타	
	배출시설					
	배 출 량	일평균		m³ 월평균		m³
[	「오산시 하수」	도 사용 조	례 시행규칙」 제	3조에 따라	위와 같이 🌣	신고합니다.
			년	월 일		
			신고인	(인	)	
오	산 시 장 귀	हो-				
첨투	부서류 : 아래	표와 같음				
	도 서 의	기종 류		명 시	학 사 항	

도 서 의 종 뉴명 시 알 사 양ㅇ 부근약도ㅇ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ㅇ 배수계통도ㅇ 배수계통, 맨홀표시, 자연배수유무 표시ㅇ 공사현장 도면ㅇ 평면도, 단면도ㅇ 오수배출량 계산서ㅇ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

### [별지 제6호서식]

	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													
진 청	주 3	٤				상	101							
성 인	대표자성	명		주민등록번호		전화	번호							
	점용장소	È.												
신	점용기간	<u>'</u>												
신 청 내	점용목적	덬												
a o	점용면적	넉												
	공사내용	3												

「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인)

## 오 산 시 장귀하

첨부서류: 1. 일반평면도(구적도 안내도 포함)

첨부서류: 2. 설계서(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함)

첨부서류: 3.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사본(해당자인 경우)

# [별지 제7호서식]

				공	공하수	-도 점용	준공검	사 신청	서	
신 -11	주	소							상 호	
청 인	대표지	·성명			주	민등록번호			전화번호	
	설치	목적								
	설치	장소								
신 청	공사 방									
내 용	공사 (구									
	7.1	공사기간	착	공						
	- 중사 	기간	준	공						
	「오산	시 하~	수도	사용	조례	시행규칙」	세5조에	따라 위	와 같이 신	청합니다.
						년	월	일		
					신크	고인		(인)		
	. 산 <i>기</i>				1 범					
점	부서류	: 1. <sup>-</sup>	일계.	노석	1부.					

#### [별지 제8호서식]

중수도 설치 신고서									
①건축주 성명	(전화번호)								
②건축물 주소									
③건축물의 주된 용도	④건축 연면적(m²)								
⑤사용 예정수량 (톤/일)	⑥중수이용 예정수량 (톤/일)								
⑦중수 처리용량 (톤/일)	⑧중수 처리방법								
⑨설치 완료예정일	⑩가동시작예정일								
⑪중수의 주된 용도									

「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오 산 시 장 귀하

첨부서류: 1. 중수도 사용계획서

- 2. 처리시설의 위치, 용량, 사업비,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
- 3.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사류
- 4.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, 평면도

## [별지 제9호서식]

	중수도 설치 확인서									
①건축주 성명	(전화번호)									
②건축물 주소										
③건축물의 주된 용도	④건축 연면적(m²)									
⑤사용 예정수량 (톤/일)	⑥중수이용 예정수량 (톤/일)									
⑦중수 처리용량 (톤/일)	⑧중수 처리방법									
⑨설치 완료일	⑩가동 시작일									
⑪중수의 주된 용도										

「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오 산 시 장

#### [별지 제10호서식]

		배수	설비 설치(	<u> </u> 고	서				리기2 5일	간
\$ 1	①법인명							<u> </u>		
설 치 자	②성 명 (대표자)				③주민-	등록번호				
^r	④주 소			·		(	전화번	호:		)
	⑤설치목적		생활							
	⑥배수설비의	재질	염화비닐관 관, PC, 도			접속방법	기계된 기, 면			북똟
	재질및 물량	평균 관경	Ø	mı	n	공공하수도 배수설비				m
	⑦설치위치 시·군·구 읍·면·동 번지( · -								반)	
설치	⑧배출수량				m <sup>s</sup>	/일				
신고	⑨공사착공 연월일		년 월 일 ⑩공사준공 예정일							일
	⑪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			_	②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					
	③공공하수도 복구방법		9	상복구, 부분복구, 일시복구						
사용	⑭배출수량		수량						$(m^3)$	/일)
시작	및 수질	수경	$\mathbb{E}(\text{mg}/\ell)$		DD:		, SS:			
신고	15사용시작일			ļ	<u>년</u>	월 일				
	하수도법」 제27조 시행규칙」 제7조에									
			년	월	일					
오 십	난 시 장 귀하					신고인	()	서명 :	또는	인)
	비서류 신고 시: 배수설비	설계서(	(배수설비 연	결지	점이 나E	타나는 도면,	1/200)		수수 없음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※ 비고: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 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「수질환경보전법」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.

(4)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「수질환경보전법」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.

## [별지 제11호서식]

# 하 수 량 점 검 카 드

(앞면)

동별	하수번호	
구경	하수종별	
업태		

	소	유	주	사	용	자
주소						·
성명						

점	검	사	1시긴	당	V) \( \sigma = \frac{1}{2} \)	4) ح	V 0 710	ì	ll	Δ1.2	_1 = 2	J A =1	사용	٠١-١-١	확	인
월	일	용	출수량	업종	[사용당]	업종	사용량2	근거	감당	월수	八十千	사용당	인구	연건평	점검원	심사

월일	산	출	근	거	사용자확인	계		·]	<u>설</u>	<b> </b>	 상	j	황
						일자	지침	기물 번호	절기	일자	지침	기물 번호	절기
							야	<u> </u>	<u> </u>	시		설	
						대	대수	구경	대	대수	구경	기	타
						ı							
						상수	전번호	업 경	를 사	용량	] "   _	할 기	금 액
						상수도					수 금 -		
						-							

# [별지 제12호서식 1]

		1							. —				
*	월 일	ō	누도	사용	료 고지서	및 영수	필 통7	시시	월	일	하수도	사용료영	수필통지서
<sub>도</sub> 첸		관리병	<u> </u> 호			성명		납부마감			관리	번호	
체납액이 독촉장을	주소				오산	시장				성명			
흘이	업종	구경	전월	지침	금일지침	사용량	정산액	가구분할		검종	사	용량	정산액
갖으면 고면													
납체								·					
납부하십시오 제납고지서	납기니 금 역	H H	납기후	금액		비 고			L E	기내  - 액			
<sup>실</sup> 서 또 는									L E	  -   액			
÷		·			위	와 같이 3	고지합니다	<del></del>		위	금액을	정히 영	수함.
	수 납 년 월 일 일 부 납부장소 : 오산시 관내 우체국· 농협 및 시중은행 인						- 1	1		은행	지점		
	취급자	취 오 산 시 장 급 (VIE) 사기(API ) 기(API)						3   3   7				산 시 보관용)	

# [별지 제12호서식 2]

_							
월	일	하수도사용료영수필통지서					
		관리번호					
성	명						
업	종	사용량		정산액			

납기내 금 액	
납기후 금 액	

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.

수 납	은행 지점
일부인	
취급자	오 산 시 (수납은행 보관용)

월	일	하수도사용료	 영수필통지서	
		관리번호		가구분할 ———
성	명			
업	종	전월지침	금월지침	
		사용량	정산액	
	기내 액			
납기금	기후 액			

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.

수 납	은행 지점
일부인	
취급자	오 산 시 (수납은행 보관용)

[별지 제13호서식]

## 정화조등 청소작업일지

작성자: 환경

대 표: (인)

청소이행 일 자	당초청소 예 정 일	청소대상 시설구분	시 설 소 재 지	시 설 소 유 자	청 소 용량(m²)	刊	고

※ 청소대상 시설구분 : 정화조, 오수처리시설로 구분 작성

#### [별지 제14호서식]

## 정화조 청소필증

주		소	동	통	반	번지
상		호				
관 및	리 건 {	자 물 주				
청	소 일	자	20	년	얼	일
청	소 업	체				
수	거 량	( m³)				

상기 회사(건물)은 「하수도법」 제39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·관리)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정화조 청소를 필하였음.

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제33조(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) 및「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제1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, <u>청소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하수도법 제80조(과태료)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</u>을 첨언하오며 청소필증은 1년동안 보관 하여야 합니다.

정화조청소업체인

## [별지 제15호서식]

# 분뇨등의 반입 확인대장

(단위 : kl)

구분	با (ما ما جا	-l -l.ul	دا جا اجا	반	입 량		
시군	반입일자	차량번호	업체명	분 노	정 화 조	비고	

[별지 제16호서식]

## 교부금 신청서

$\cap$	업체	17	
( )	31 VII	ᄓ	_
$\sim$	- III	O	•

○ 사업명 : 분뇨수집·운반업체 분뇨처리비 교부금 지급

○ 교부신청금액: 원

○ 신청액 산정근거 : 「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제26조에 따라 납부한 분뇨처리장 사용료의 10퍼센트

가.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납부한 분뇨처리장사용료 :

나. 교부금액 : 원( 원×10%)

「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업체명: ①

대표자: ①

오 산 시 장 귀하

# [별지 제17호서식]

		의 견 제 출 서
1. 예정된처 제	분의 목	과태료 부과
2. 당사자	성 명 (명 칭)	
	주 소	
3. 의 견		
4. 기 타		
「행정절	·  차법」 제2	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		20 년 월 일
의견	면 제출인 즉 성	주소: (전화: ) 성명: (서명 또는 인)
오 산 시	장 귀하	
<sup>비</sup>   2. 증기   기   3. 위	거자료 등을 의견과 관	주하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 난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 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[별지 제18호서식]

##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

문서번호 : 상하수과 -

시행일자: . . .

수 신:

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1항 규정 및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앞서 사전 통지합니다.

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면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의견제출 기한 내 이의가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1. 예정된처· 제 목	분의		과태료 부	과태료 부과									
2. 당사자	성 (대표	명 [자)											
	주	소											
3. 처분의 원 되는 사실			오수처리시	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									
4. 처분하고자하는 내 용			과태료	과태료 만원									
5. 법 적 근	거		「하수도법」제80조,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7조, 제18조										
			기관명	오산시청	부서명	상하수과							
6. 의 견 제 출		주 소	오산시 오산동	915 (오산시	성호대로 165)								
			기 한	기 한 일까지									
			호	. 산 시 장	(인)								

#### [별지 제19호서식]

#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

문서번호: 상하수과-

수 신:

제 목: 과태료 처분통지

1.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.

가. 위반일시:

나. 위반내용 :

- 2.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따라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3.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.

년 월 일

오 산 시 장

[별ス	시 제20호서식]		

### [별지 제21호서식]

	과태료 납부 독촉장										
납 부	정	명			주민등록번호	_					
의무자	주	소									
과태료납	부통지	서번.	<u>ই</u>								
위 반 사	항										
과태료 금	구액				당초 납부 기일						

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에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.

년 월 일

오 산 시 장 ⑩

## [별지 제22호서식]

	1		과태료 처분0	베 대한	이의신	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			
신	①성	명			②주민	등록번	호		_	
청 인	③주	소								
			④부과기간				후통지 호			
	- 태 료  분내역		⑥고지받은일자			⑦과 터	대료금 <sup>©</sup>	백		
716 11 1			⑧과태료처분 사 유							
⑨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										
불년	복하여 여	이의를 저	구제법」 제20조(이의 레기하오니 「비송사 시기 바랍니다.							
						년	월	일		
					신청인			<b>(1)</b>		
오	산 시	장 귀히	-							

#### [별지 제23호서식]

제	호
. 4	

수 신:

제 목 :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

- 1. 「하수도법」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와 관련입니다.
- 2. 상기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 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	①성 명	②주민등록번호	-
	③주 소		
과태료처분내역	④고지일자	⑤과태료금액	
	⑥부과기간	⑦이의제기일자	

첨부: 1.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.

- 2.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.
- 3.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1부. 끝.

년 월 일

오 산 시 장 ①

# [별지 제24호서식]

			하수도(	(사용화	룬 점용	응료 부담금	·) 감!	면신경	청서		
,1	관리	헌호				생년월일		년	Ç	월	일생
사 용 자	용 주 소						상	호			
7 1	대표지	성명			업태		전화	번호			
양	감면>	기간									
태 별	감면/	사유									
	「오산시	하수.	도 사용	조례 /	시행규칙 년	」제21조에 월	따라 일	위와	같이 ~	신청합	니다.
				신고	<u> 인</u>		(인)				
오	산 시	장 귀	<u>ō</u> }-								
 천.	<u></u> 보서류 '	· 1 0]	증서류 1	—— 1							

[별지 제25호서식] 〈개정 2023. 6. 1〉

	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급(충당)통지서													
관리자의 성 명						생년	1월일			년	월	일생		
주 소						상	상 호							
	월분	정당	납부	기 납	부	과오	과 오	오 납	환 급 이 자					
	包记	(납입)		(납입)		납액	납액 월		일	시	금	액		
과오납액														
	과 오	2 납						충당후잔액						
	합겨	] 액						급액)						
	월분		미납금	- 액		충당금	급액		과	오납된	사유			
충당금액														
	충당							충당후의						
	금액							미니	납 액					

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「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제2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.

#### 오 산 시 장 (인)

첨부서류 : 1. 「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24조제4항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하시기 바랍니다.

2.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지 제26호서식] 〈개정 2023. 6. 1〉

	하수도사용료등 과오납금 환급청구서													
수	신					오 산	시	장						
관리지						생년월일			년	월	일생			
성	명 	61 F					27 -11	-1						
년 	도	월 분	1	H 용	-	과오납금액	환급이기	사		청구금액				
			2산시 ㅎ	하수도	사-	용 조례 시행규칙	칙」 제24조	.제4호	항에 따라	청구하오니	반환			
하여 주	·시기	바랍니다.												
				구자 성			(인)							
				r^r /8 년 월			(인/							
			 하수 <u>!</u>	도사 도사	론	로 과오납금	 환급 2	- (수	 증					
	신 	61 E		11 Q		_	시							
년 	도	월 분	·   L	게 용 		과오납금액	환급이기	^r 		청구금액				
	위의 ·	금액을 영국	수함.											
						년	월	일						
						영수자 성명		(인	)					
İ														

# [별지 제27호서식] 〈신설 2023. 6. 1〉

이 의 신 청 서					처리기한
					60일
납부자	성 명 (법인명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,	
	상 호 (법인인 경우 대표자)		사업자등록번호		
	주 소 (영업소)				
	전화번호		전자우편주소		
신청인 (대리인)	성 명		생년월일		
	주 소				
	전화번호		전자우편주소		
처 분 내 용	처 분 청		급 액		
	처분(통지)받은 날				
	처분(통지) 내용				
이의신청 사유 (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기재)					
「오산시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」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. 년 월 일					
납부자(위임인): (서				(서)	명 또는 인)
신청인(대리인) :				(서)	명 또는 인)
오산시장 귀하					
붙임: 1. 이의신청 사유(별지기재 한 경우) 2.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					